

#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

영국한  
대한민국을  
어는  
정부 3.0

수신 요트경기장 계류선박 소유자 귀하  
(경유)

제목 「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상황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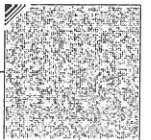
1. 평소 요트경기장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. 업체)에 감사드립니다.
2. 2017.3.8. 제260회 부산광역시 의회 임시회에서 「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, 우리 요트경기장에서는 개정조례 시행 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트경기장내 선박 계류허가 신청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「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상황
  - 조례공포 예정일 : 2017.3.22.(수)
  - 조례시행 예정일 : 2017.4.23.(일)
  - 주요내용
    - 요트경기장 계류허가 시 「선박법」 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라 등록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허가(미등록 선박은 요트경기장 반입 및 계류허가 불가)

[신·구 조문 대비표]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6조의2(계류장 이용허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문체육시설 중 <u>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선박법」 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</li> <li>2.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는 자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의 경우, 제6조를 준용한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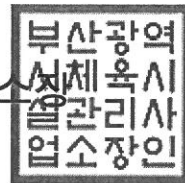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전용이용허가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체육시설의 <u>전용이용허가</u>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용이용허가</u>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</li> <li>2. <u>전용이용허가</u>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3.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7조(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전용이용허가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(이하 “전용이용허가등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용이용허가등</u> ----- -----</li> <li>2. <u>전용이용허가등</u>----- -----</li> <li>3.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11조(이용료의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전용이용자</u>나 반월회원권·월회원권 또는 분기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~ 라. (생략)</li> </ol>	<p>제11조(이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전용이용자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자</u>----- -----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24조(권한의 위임) ① 시장은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제7조에 따른 <u>전용이용허가</u>의 취소 등</li> <li>6. ~ 12. (생략)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	<p>제24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제6조의2에 따른 <u>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</u></li> <li>6. ----- <u>전용이용허가등</u>의 -----</li> <li>7. ~ 13. (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4]</p> <p><b>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</b>(제9조제1항 관련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요트경기장 이용료</p> <p>[비고]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선박길이는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의 <u>선박길이를 하고, 미등록 선박은 전체길이를 한다.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[별표 4]</p> <p><b>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</b>(제9조제1항 관련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요트경기장 이용료</p> <p>[비고]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선박길이를 한다.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· 끝

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



주무관

문장요

요트경기장관 2017. 3. 9.

리장 송철중

협조자

시행 요트경기장-1632

(2017. 3. 9.)

접수

우 47545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, (우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) / <http://stadium.busan.go.kr>

전화번호 051-740-2213

팩스번호 051-740-2280

/ [tyui747@korea.kr](mailto:tyui747@korea.kr)

/ 대국민 공개

시민중심, 현장우선, 책임시정